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7,969,147	18,539,074
일반회계		543,277,412	16,298,322
특별회계		74,691,735	2,240,752
	공기업특별회계	64,198,762	1,925,963
	상수도공기업	35,552,588	1,066,578
	하수도공기업	28,646,174	859,385
	기타특별회계	10,492,973	314,789
	의료급여기금운영	1,031,524	30,9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39,228	19,1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5,271	4,058
	공영개발사업	407,412	12,222
	농공지구조성사업	4,271,134	128,134
	수질개선	540,994	16,230
	주택사업	3,081,398	92,442
	기반시설	22,612	678
	장기미집행	363,400	10,90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50,16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